

제 2022-065 호

##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1. 상 호 명 : 현대개발(주)
2. 사업자등록번호 : 412-81-27967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정길201(신창동)
4. 공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01 (신창동)
5. 대표자성명 : 박철수
6. 대상제품 : 레미콘[25-21-150,전라도]
7. 제 품 명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21-150, 전라도]
8. 인증기간 : 2022년 02월 28일 ~ 2025년 02월 27일
9. 인증내용 : 환경성적표지(별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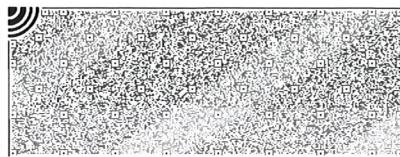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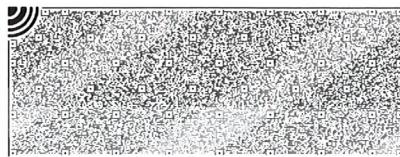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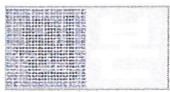
제 2022-065 호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환경성적

환경영향범주	제조전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총 값
자원발자국 (kg Sb-eq./m <sup>3</sup> )	6.96E-01	7.58E-03	-	-	7.03E-01
탄소발자국 (kg CO <sub>2</sub> -eq./m <sup>3</sup> )	2.24E+02	1.19E+00	-	-	2.25E+02
오존층영향 (kg CFC-11-eq./m <sup>3</sup> )	1.06E-01	6.62E-08	-	-	1.06E-01
산성비 (kg SO <sub>2</sub> -eq./m <sup>3</sup> )	2.10E-01	2.51E-03	-	-	2.12E-01
부영양화 (kg PO <sub>4</sub> ^3--eq./m <sup>3</sup> )	5.22E-02	3.99E-04	-	-	5.26E-02
광화학스모그 (kg C <sub>2</sub> H <sub>4</sub> -eq./m <sup>3</sup> )	8.25E-02	4.48E-05	-	-	8.26E-02
물발자국 (m <sup>3</sup> H <sub>2</sub> O-eq./m <sup>3</sup> )	4.16E-01	9.45E-02	-	-	5.10E-01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

구분	기업명	공장소재지	제품명	비고
생산재	현대개발(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01 (신창동)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21-150, 전라도]	파생



# 환경성적표시 인증 약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성적표지는 국제표준 ISO 14025(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Principles and procedures)에 근거하여 한국정부(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선언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제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탄소발자국(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자원발자국(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광화학 스모그(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 7 가지의 영향법주를 포함하며, 탄소발자국은 탄소발자국(1단계)과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해외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선언 제도인 스웨덴 International EPD, 독일 EPD, 노르웨이 EPD, 미국 EPD, 일본 Eco-leaf, 대만 EPD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인증내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인증기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형상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준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 ③ 인증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환경성적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표기해서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다음과 같은 인증 관련 변경사항을 자체없이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제조공장의 예전 또는 변경,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영도, 영수 또는 합병, 생산의 중단 및 폐업
- 2.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 ⑦ ‘인증기업’은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성적표지 사용 권리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환경성적표지 도안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사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0조(환경성적표지 표시방법 및 형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업’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표시하거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경고를 할 경우 인증제품 및 설명서,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각종 서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지만, 합법적으로 일반화된 정보 또는 업무의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는 본 조항의 제속을 받지 않는다.

제6조(인증의 범위) ‘인증기관’이 ‘인증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은 ‘인증기업’의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인증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승인·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인증제품 제출) ‘인증기업’은 인증을 받은 후 환경성적표지 표시사항 등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도안이 표시된 인증제품 제출에 대한 ‘인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품 특성,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견본제품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가 표시된 제품 설명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지침의 변경)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작성지침 또는 「제단소제품 인증지침」이 제·개정 되었을 경우, ‘인증기업’에게 제·개정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갱신인증) ‘인증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증내역 변경) ‘인증기업’은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업’에게 있다.

제11조(시정요구 및 인증취소) ①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환경성적표지를 인증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작성지침 별표6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3. 제3조와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 괴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의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3.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가지변이나 그 끝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③ 관계법령 및 고시 등에 별도로 처분에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처분기준에 따른다.

제12조(관련업무) ①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만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지의 표시 및 경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증기업’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증기관’이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인증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인증기업’에게 있다.

제14조(권리·양도 등 금지) ‘인증기업’은 인증서에 정한 환경성적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이해조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간 상호 협의 및 업무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쟁의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인증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